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부문/등급	갑종	을종	병종
1. 해상 부문	<p>가.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p> <p>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p>	<p>가. 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p> <p>나.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p> <p>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라. 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p> <p>마.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바.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검색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p>	<p>가. 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p> <p>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p> <p>다.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방제선(「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방제선으로 한정한다)에 승무하여 해양오염 방제작업, 예방 및 단속활동, 선박점검 등에 종사하는 사람</p>
2. 방역· 보건 및 수의 부 문		<p>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p> <p>나.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p> <p>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p> <p>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p>	<p>가.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사체 검사)을 담당하는 사람</p>
3. 공업 연구 부 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 산업연 구부문		<p>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시약·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p>	<p>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p> <p>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씨가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관리 등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5.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각 부문	<p>가.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공무원</p> <p>나.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기동대·방법순찰대·과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p> <p>다.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p>	<p>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p> <p>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p> <p>다.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감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라.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마.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바.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사.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절벽·바위산·낭떠러지에서 실족·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아.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공기 급유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p> <p>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p>	<p>가.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p> <p>나.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p> <p>다. 구급차의 운전원</p> <p>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바.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 기계의 조작·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사. 해양경찰청에서 함정의 정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아.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경찰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p> <p>자.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차.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림토목, 벌목·집재, 조림·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가공, 보호, 양묘 등의 산림사업 업무에 종사하는</p>

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가유산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국가유산 연구 및 보존 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항공기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항공기에 동승 근무하는 항공기 검사공무원

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에서 원전 관련 시설 및 방사능 방재분야 안전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파.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대응·복구·조사하는 사람 또는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실험, 연구 및 훈련을 하거나 취급 시설을 점검하여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따르는 사람

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터널 등 국도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너.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에 따른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카.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 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 협의, 안전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공무원

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위험기상·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관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구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p>출입국관리공무원</p> <p>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p> <p>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p> <p>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통관우체국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소증지자 등에 대한 소재수사·검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	--	--

비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000원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위 표 제1호 갑종란의 나목
2. 위 표 제5호 갑종란
3. 위 표 제6호 갑종란의 가목·나목 또는 라목